

###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(안)

의안	
번호	

제출연월일 : '99. 9.

제출자 : 동두천시장

개정이유

도로법(제80조의2)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용어가 정비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.

주요골자

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정비함.

동두천시조례 제            호

### 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

동두천시도로점용및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 조제목 및 본문, 제3조제2항, 제3조의2 제1항, 제4조제4항, 제5조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, 제6조, 제7조제2항, 제9조중 “부당이득금”을 “변상금”으로 한다.

부           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 점용료 및 <u>부당이득금</u>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.</p>	<p>제6조(점용료등의 강제징수)--<u>변상금</u>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점용료의 조정) ① (생략) ②<u>부당이득금</u>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7조(점용료의 조정) ①(현행과 같음) ②<u>변상금</u>----- -----.</p>
<p>제9조(이의신청) 점용료, <u>부당이득금</u> 및 수수료의 부과.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</p>	<p>제9조(이의신청) -----<u>변상금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